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2870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4,256,5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56,5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 1) D주식회사는 C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6차전1736), ‘C는 위 회사에게 5,722,985원 및 위 돈 중 5,421,647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6. 8. 26.자 지급명령이 2016. 9. 1. C에게 도달되어 2016. 9. 20.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
- 2) D주식회사는 2018. 3. 15.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21. 1. 2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C에게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주식회사 E도 채권양도 통지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2021. 10. 27. 공시송달명령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카기546).
- 3) 2022. 12. 8. 기준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은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14,256,508원이다.

나. 처분행위

- 1) F, C와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의 자녀들이다.
- 2)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와 F,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았다. 피고와 F, C는 2018.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중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피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접수 2018. 9. 4. 제724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F의 배우자 H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오랜 기간 망인을 부양한 점 등을 참작하여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임차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2018. 9. 5.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4. 6.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H은 2021.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본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C에게는 적극재산으로 자동차 3대가 있는 반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 외에 총 320,172,000원의 채무가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소극재산		적극재산	
채권자	채무액(원)	차량	비고
J	198,669,000	(차량번호 1)	※2015. 6. 29. 멸실인정
K	21,503,000	(차량번호 2)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담보 차량
화성세무서(체납)	100,000,000	(차량번호 3)	시세 9,800,000원

나. 사해행위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던 C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C가 망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차례 세금을 체납하였으므로 망인의 체납 세금 납부는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 체납 세금 약 7,465,420원 중 5,465,420원과 망인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1,005,910원을 대납한 점,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H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재산분할의 결과가 C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체납세금 납부액이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H의 망인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인정한 전세보증금은 망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만이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의 범위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80,000,000원이므로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약 26,666,666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체납세액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약 23,842,890원이다.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2. 12. 8. 기준으로 14,256,508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가장 적은 금액인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14,256,5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14,256,5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경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동[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동 및 동 동

1층 602.09㎡ 2층 662.04㎡ 3층 662.04㎡ 4층 662.04㎡

5층 662.04㎡ 지하실 255.41㎡

 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펌프실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9.4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전광역시 서구 대 2118.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2118.7분의 43.18

끝.

